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다243037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다24303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나31926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소20531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B

판결 선고 2020. 10. 29.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나3192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노정희

주심대법관박상옥

대법관안철상

대법관김상환